

-2026년 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

세종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
통합 모집공고

- 2026년 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- 세종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통합 모집공고

(재)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(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)은 세종시 소재·부품·장비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기업 성장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「2026년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」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. 3. 4.

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(사업명) '26년 세종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
- (사업목적)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고용유지
- (사업기간) 2026. 2. 1. ~ 12. 31.
- (사업대상)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코드를 보유한 세종시 소재 기업
- (지원규모)

| 사업유형 | 세부 사업명 | 목표 | 사업내용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고용 장려금 | 산업수요 연계 핵심인력 확보·정착 촉진 프로젝트 | 30개사 | ▪ <기존> 고용촉진 장려금(사업주장려금) → 100만원 × 6개월 = 600만원 |
| | | 20명 | ▪ <신규> 핵심인력(3~5년 이내 재직자) 정착 인센티브 (근로자장려금) → 50만원 × 6개월 = 300만원 |
| 기업지원 | 기업 성장단계별 일자리 확장 패키지 프로젝트 | 15개사 | ▪ 비R&D 사업화 지원 : 기업당 최대 1,500만원 ① 기술고도화·사업화 패키지 : 시제품제작, 제품 시험인증 컨설팅 ② 지식재산·브랜드 경쟁력 패키지 : 특허 출원 컨설팅, 홍보·마케팅 ③ 판로개척·시장확장 패키지 : 국내·외 신규거래선 발굴 ④ DX전환·핵심공정 연계 패키지 : 생산·가공·조립 등 공정 개선 컨설팅·시스템 도입 |
| 고용 환경개선 |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·확대 프로젝트 | 40명 | ▪ 근로환경 개선 지원 ※ 수혜기업 자부담 20% 이상 ① <기존> 기숙사 임차비 지원 → 30만원 × 6개월 = 180만원 |
| | | 10개사 | ② <신규> 고용환경개선 컨설팅 → 50만원 × 4회 = 200만원 |
| | | 5개사 | ③ <신규> 고용환경 시설개선 → 최대 800만원 |

2

신청시 유의사항

○ (필수) 프로젝트별로 공고문을 확인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맞는 붙임의 작성서식으로 사업신청서 및 서류 제출

○ 기업의 지원대상(소재부품장비·미래모빌리티) 산업코드는 붙임의 **참고 2**에서 확인

※ 산업분류코드 확인 방법 :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 토털서비스(<http://total.comwel.or.kr>) → 사업자명의인증서 로그인 → 정보조회 →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→ 고용보험 업종 코드 확인

※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는 기준은 ①고용보험상 사업장 소재지, ②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, ③기타 사업장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(공장등록증, 사업자등록증 등) 등으로 규정

○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

○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필요에 따라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○ 본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타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유사 사업 사전 확인 후 신청 必

○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, 선정기업은 2026년도 일자리창출 실적 확인 및 성과 지표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(채용 확인서, 4대보험 가입명부 등)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○ (사전 교육과정) 본 사업의 모든 수혜자는 지원금 지급 이전에 「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」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

○ 각 사업별 수행기관 연락처

| 구분 | 연락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산업수요 연계 핵심인력 확보·정책 추진 | (재)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: 044-251-3262~4 |
| 기업 성장단계별 일자리 확장 패키지 | 홍익대(세종) 산학협력단 융합인재센터 : 044-860-2172~3 |
|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·확대 |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: 070-7780-2439 |

1 고용촉진 장려금

□ **지원내용**

- '26년 2월 1일 후 신규채용된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에게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
- (지원규모) 총 30개사 / 기업당 1명 지원
- (지원금액) 월 100만원 × 6개월 지원(1인 최대 600만원)
- (지원방식) 선정 대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기업에게 지급
- (신청기간) 공고 후 마감 시까지(선착순)
- (수행기관) (재)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

□ **지원조건**

- (지원자격) 아래 요건(기업·근로자)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|---|
| ① 기업요건 | · 세종특별자치시 내 입주한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모빌리티 기업 |
| ② 근로자요건 | · '26.02.01.(토)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- (정규직 요건)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, 고용보험 가입 - (나이)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- 최저임금 110% 이상 ※ 최저임금 100~109%의 정규직 인 경우, 1개월 당 8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|

【 최저임금 기준 (2026년) 】

- (최저임금 100%) 공제 전 (시급) 10,320원 (일급) 82,560원 (월급) 2,156,880원(주 40시간 기준)
- (최저임금 110%) 공제 전 (시급) 11,352원 (일급) 90,816원 (월급) 2,372,568원(주 40시간 기준)
- ※ 기본급, 기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
- ※ 초과근무수당 등은 제외

2 재직자 장려금

□ 지원내용

- 사업신청일 기준 세종시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기업에서 3~5년 동안 재직한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
- (지원규모) 총 20명 / 기업당 1명 지원
- (지원금액) 월 50만원 × 6개월 지원(1인 최대 300만원)
- (지원방식)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근속 사실 확인 후 근로자 계좌로 지급
- (신청기간) '26.3.4.(수)~3.25.(수) 18:00 / 마감시간 준수
- (수행기관) (재)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

□ 지원조건

- (지원자격) 아래 요건(기업·근로자)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|---|
| ① 기업요건 | · 세종특별자치시 내 입주한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모빌리티 기업 |
| ② 근로자요건 | ·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되어 근무단절 없이 3~5년 동안 지속 근무한 근로자 - (정규직 요건)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, 고용보험 가입 - 최저임금 100% 이상 - (지원제외) 근무기간 중 휴업·휴직(사업장 사정), 휴직(병가 등 근로자 사정), 노조전임자, 기타 등 근속 중단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 |

□ 지원절차



□ 선정기준

○ '선정 기준표'에 의거 점수를 매겨 우선순위를 정함

| 평가항목 | 평가내용 | 배점 |
|--------------|--|----|
| 전략산업성과 | 전략산업핵심 직무 수행도, 기업 매출 성과 기여도, 기술혁신등 개선 실적 | 35 |
| 전문성·숙련수준 | 직무 숙련도 수준, 핵심기술 수행 역량, 기술 대체불가능성·희소성 | 30 |
| 근속조직 | 전략산업 연속 재직기간, 핵심 직무 지속 수행 안정성, 조직 내 역할 확장 및 책임 수준의 변화 | 15 |
| 지역 산업 연계 활동성 | 지역 산업 생태계 참여도, 직무 성과의 지역 산업 파급성 | 10 |
| 정주 및 근속 의지 | 전략산업 내 경력 지속성, 지역 정착 계획의 구체성 | 10 |
| 가점항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 전략산업 핵심자격 보유(+1점) • 특허/지식재산 보유, 기술이전 실적 보유(+2점) • 정부 R&D 핵심 참여 실적(+1점) • 청년(만 39세 이하) 핵심기술 인력(+1점) | 5 |

3 신청방법 [장려금 공통]

□ 사업 신청방법

○ (공고 및 접수)

- (고용촉진장려금) 공고 후 접수인원 마감시까지 선착순
- (재직자장려금) '26.3.4.(수)~3.25.(수) 16:00까지

○ (접수방법) 이메일 접수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
- 이메일 : hy3232@sjepa.or.kr
- 아래의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
-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 확인 필수

○ (제출서류) 작성서식 및 증빙서류 각 1부

| 구분 | 작성서류 | 증빙서류 |
|------------|--|--|
| 사업 신청서류 | ① (공통서식1)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② (공통서식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③ (서식1) 정규직 채용(전환)자 명단 ④ 참여기업참여자 자격확인 및 동의서 (서식6) 고용촉진장려금 / (서식7) 재직자장려금 ⑤ (서식9) 핵심인재 인증 직무기술서 (재직자 장려금 신청시에만 제출) | ①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②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③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(신청일 직전 월말 발급본)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대상산업 확인 서류 (산업분류코드 확인) ⑥ 근로계약서 사본(입사일 명시) |

※ 모든 서류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

□ 문 의 처

- (재)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☎ 044-251-3262~4

□ 지원금[사업주·재직자] 신청방법

- (신청시기) 선정기업의 참여기업 담당자 또는 참여 근로자가 월 단위 사후신청 ※ 상세사항은 선정기업 대상으로 담당자가 추후 안내
- 기업이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확인 후, 지원기간이 경과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함
- ※ '26년 12월 예산 마감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 안에만 지원됨

(예시) '26년 9월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'26년 9월~12월이 사업 기간으로 4개월 지원됨.

- (지원금 신청서류)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-|--|
| 고용촉진 장려금 | ① (서식3)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지원기간 말일 이후 기준) ③ 임금지급 증빙자료(급여명세서 또는 송금확인증 등) ④ 통장 사본(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) ⑤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교육 수료증 1부(근로자 본인/ 최초 1회 제출) |
| 재직자 장려금 | ① (서식8) 재직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 임금지급 증빙자료(급여명세서 또는 송금확인증 등) ③ 재직증명서 ④ 근로자(참여자)고용보험 가입확인서 ⑤ 근로자 통장 사본(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) ⑥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교육 수료증 1부(근로자 본인/ 최초 1회 제출) |

□ 지원개요

- (지원규모) 총 2억원 (15개사, 기업당 최대 1,500만원)
- (지원기간) 2026. 4. 1. ~ 2026. 12. 31. (9개월)
- (지원대상)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재부품장비·미래모빌리티 산업 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
 - 소재부품장비·미래모빌리티산업 KSIC 코드를 보유한 기업 ※ 산업코드 분류표 참고
 - ※ 산업분류코드 확인 방법 :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(<http://total.comwel.or.kr>) → 사업자명의인증서 로그인 → 정보조회 →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→ 고용보험 업종 코드 확인
 - ※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는 기준은 ①고용보험상 사업장 소재지, ②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, ③기타 사업장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서류(공장등록증, 사업자등록증 등) 등으로 규정
- (지원방식) 기업 협약 후 직접지원 ※ (직접지원) 지원기관 → 협약기업
 - 기업이 사업비를 선집행하고, 결과보고서 평가 후 지원금을 지급함
 - 결과보고서 제출 시, 선지출에 대한 지원금 지급청구서 및 증빙 제출
 - ※ 지원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,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전액 부담함
 - ※ 지원금 청구 시, '지원금+부가세'가 포함된 전체 지출 증빙 제출 필수
 - (예시) Tech Value-Up : (지원금) 15,000천원+(부가세) 1,500천원=총 16,500천원 지출증빙 제출
 - 결과보고서 평가 이후, 15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
 - ※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기한은 10월 17일 2주 이내 평가 진행 후 11월 1-2주 지원금 지급 예정
- (주요내용) 4-UP 패키지 프로젝트 지원

※ 각 패키지는 2개 이상 프로그램 구성 원칙, 패키지 중복수혜 불가(기업당 1개 패키지만 신청 가능)
※ 부가세 별도, 지원금액(공급가액)의 부가세 10%는 협약기업이 부담

| 구분 | 세부 프로그램 | 세부내용 | 지원금액 (천원) | 목표 (개사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Tech Value-Up (기술고도화 및 실증) | ① 시제품 제작/고도화 | · 부품 등 HW에 대한 시제품 제작/고도화 지원 · HW/SW 양산 전단계 워킹샘플 제작 및 기능 개선 지원 | 15,000 | 5 |
| | ② 제품 국내외 시험/인증 | · 제품 품질인증, 공인성적서, 시험, 검사, 평가 등 · 국내외 인증 등록, 갱신, 연장 등 인증 전반 지원 | | |
| | ③ 연구장비 활용 | · 연구장비 활용 신뢰성 테스트 및 제품 성능 검증 · 기술개발 연구장비 임대료 지원 | | |
| | ④ 기술고도화 산학연구 | · 기술개발/고도화를 위한 산-학연계 프로젝트 · 기술적 애로사항 대학 랩실연계 솔루션 개발 지원 | | |
| | ⑤ 공정 최적화 컨설팅 | · 제조 리드타임 획기적 단축 및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 · 기업 최적화 공정 개선 로드맵 수립 | | |
| | ⑥ DX/MES 시스템 구축 | · 스마트 팩토리 기초단계 DX/MES 구축 지원 · 공정 디지털화 및 실시간 품질 관리 체계 구축 | | |
| Goods Market-Up (시장확장/ 판로개척) | ① 특허출원 컨설팅 | ·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· 경쟁사 회피 설계 및 IP 포트폴리오 구축 | 15,000 | 5 |
| | ② 제품 국내외 시험/인증 | · 제품 품질인증, 공인성적서, 시험, 검사, 평가 등 · 국내외 인증 등록, 갱신, 연장 등 인증 전반 지원 | | |
| | ③ 국내외 신규거래선 발굴 | · 기업 주도적 전·후방 거래처 발굴 마케팅 활동 · 활동에 소요되는 항공료, 숙박비, 통역비 등 지원 | | |
| | ④ 제품/패키지 디자인 고급화 | · 시장 트렌드 및 브랜드 정체성 반영 디자인 개발 지원 · 프리미엄 패키징으로 제품 차별화 경쟁력 확보 | | |
| | ⑤ SNS/검색엔진 홍보 | ·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및 최적 검색엔진 홍보 · 유튜브, 포털검색광고 등 타겟 맞춤형 마케팅 지원 | | |
| | ⑥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 | · 아마존,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/국내 대형 오픈마켓 입점을 위한 절차 및 마케팅 지원 | | |
| | ⑦ IR 및 홍보자료 제작 | ·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(책자, 영상 등) 제작 · 제품 홍보자료(브로슈어, 홈페이지, 영상 등) 제작 | | |
| | ⑧ 브랜드(BI/CI) 컨설팅 | · BI/CI 디자인, 브랜드 네이밍 제작 및 개선 지원 · 기업 이미지 체계적 정립 및 대내외 신뢰도 개선 | | |
| Brand Scale-Up (기업경쟁력 강화) | ① 신사업 다각화 컨설팅 | ·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피보팅 전략수립 컨설팅 · 수익구조 개선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설계 지원 | 10,000 | 2 |
| | ②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| · 전문 투자심사역 1:1 매칭으로 기업가치 제고 · 실질적인 투자가 성사되도록 IR 코칭 지원 | | |
| | ③ 기술가치평가 컨설팅 | ·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실제 자금 조달 가능성 제고 · R&D → 수익회수 선순환 구조 설계 컨설팅 지원 | | |
| | ④ 규제해소 법률 컨설팅 | · 신기술 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법률 자문 지원 ·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→ 승인 전 과정 밀착 지원 | | |
| | ⑤ 채용 홍보콘텐츠 제작 | · 트렌디한 채용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지원 · 근무 환경/조직 문화 브랜딩으로 지역인재 확보 | | |
| | ⑥ 재직자 기술전환 교육비 | · 재직자 신기술(AI, 미래차 등) 직무전환 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| | |
| Custom Core-Up (기업주도 자율설계) | 기업주도 패키지 자율설계 | · 각 패키지(기술·판로·고용)에서 필요한 동력을 기 업주도 자율설계로 솔루션 최적화 | 10,000 | 3 |

○ (의무사항)

-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
- 세종국제교육기술센터 교육과정 이수(기업 담당자 1인, 1회 이상)
- 당해 근로자 고용 성과 제출 (1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 필수)
- 당해 매출/수출 성과 제출
- 사후 3년간 실적제출 협약서 제출

○ (연계혜택)

- (우수인재 취업연계) 홍익대가 수행하는 주요 인력양성 교육·훈련 수료자 및 지역 내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, 뿌리산업의 다양한 취업 정보제공 및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 활성화
- (인프라 구축) 산학연계를 통한 세종지역 내 뿌리산업 전·후방 연관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

○ (모집기간) 2026년 3월 4일(수) ~ 3월 25일(수) 16:00까지

□ 신청방법

- (접수방법) 필수 제출서류 양식 작성 후, 지원기관 이메일 접수
- (접수처) 홍익대(세종) 융합인재센터 김유정 팀장 : eujeje@hongik.ac.kr

□ 제출서류

○ (필수제출) ※ 서류는 한 개의 묶음(압축)파일 형태로 업로드_기업명

- ① [서식 1] 신청서 및 상세계획서
- ② [서식 2]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③ [서식 3] 기업 참여 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
- ④ 사업자등록증
- ⑤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(참여 신청시 발급본)
-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(2022~2024년)

※ 지원금 신청시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교육 수료증 1부 제출 필수(기업 담당자/ 최초 1회 제출)

□ 평가방법 및 기준

- (평가방법) 예비진단(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) → 면담/현장실태조사 → 선정평가(서면평가)
- (평가기준) 지원필요성, 지원내용의 타당성, 기술성, 사업성, 기대효과 및 우대가점 반영하여 평가

| 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
|----------------|--|----|
| 기업역량 (20) | · 안전·건전성(업력, 기업규모, 인력 등) | 10 |
| | · 지원요청(적극 참여) 의지 | 10 |
| 지원 필요성 (30) | · 달성목표(목적)의 명확·구체성 | 10 |
| | · 지원대상제품의 사양, 애로사항,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(본 사업 합목적성) | 10 |
| | · 지원금액 편성 적정성 | 10 |
| 기술성 (20) | · 내용, 범위, 일정의 적절성 | 10 |
| | · 산업·제품·기술의 효과성 | 10 |
| 사업성 (30) | · 매출·수출 성과 창출 | 10 |
| | · 신규고용 등 일자리 창출 | 10 |
| | ·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| 10 |

※ 70점 이상 선정. 단, 동일 프로그램 내 70점 이상 과제가 다수 있을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신청 접수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, 접수 마감시간(16시) 준수
- 신청완료 후 내용 수정 불가하며,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결격 처리될 수 있음
-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면담/현장실태조사 등 추진 시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「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
※ 지원제외대상

-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,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 기업의 부도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 - 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최근년도에 공표 중인 기업
 - * (확인 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사전정보 공표목록 > 산재예방/산재보상 >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용보험법」과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 등을 받고 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주
-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-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전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기업
- 국세, 지방세 체납기업(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)
-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)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자본전액잠식(단,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)
- 이외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□ 추진일정

| 절 차 | 주요역할 및 추진내용 | 주체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모집공고 | - 협약기업 모집공고 게시 | - 일자리경제진흥원 |
| ↓ | | |
| 접수/신청 | - 협약기업 지원신청서 이메일 접수 (접수/신청 : 3. 4. ~ 3. 25.) | - 신청기업 |
| ↓ | | |
| 신청기업 예비진단 | - 선정평가 3일전까지 예비진단 완료 | - 홍익대학교(세종) |
| 현장실태조사 | - 지원기업별 신청자료를 활용해 신청기업 참여 제한 및 중복가능성 진단 | - 신청기업 |
| ↓ | | |
| 선정평가위원회 | - 신청기업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실시 | |
| ↓ | | |
|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| -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(서면평가)를 통한 협약기업 선정 | - 홍익대학교(세종) |
| ↓ | | |
| 사업수행 및 성과창출 | - 선정결과 통보 및 지원기관-신청기업 협약체결 | - 홍익대학교(세종) - 선정기업 |
| ↓ | | |
| | - 분기별 모니터링,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, 네트워크 구축, 고용성과 창출 | - 일자리경제진흥원 - 홍익대학교(세종) - 협약기업 |

□ 문의처

| 기관명 | 담당자 | 전화번호 | 이메일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홍익대학교(세종) | 김유정 팀장 | 044-860-2172 | eujeje@hongik.ac.kr |
| 융합인재센터 | 한정현 선임 | 044-860-2173 | hanjh@hongik.ac.kr |

1 **기숙사 임차비 지원**

□ **지원내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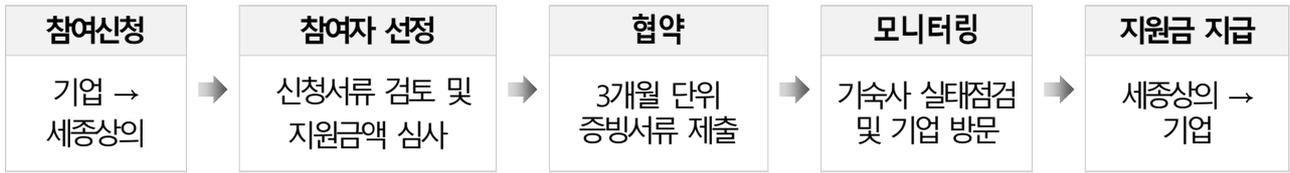
- 세종시 내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, 최대 6개월 지원
- (지원규모) 40명
 - ※ 기업당 최대 3명(신청 인원 중 1명 이상 신규직원 필수)
- (지원금액) 월 최대 30만원 한도(임차료의 80% 이내)
 - ※ 최대 6개월분 지급(총 180만원 이내)
 - ※ 보증금 및 관리비, 임차비 차액은 기업 부담
- (지원방식) 대상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선지급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3개월 단위 사후 신청
- (지원기간) 2026. 02. 01. ~ 12. 31.
- (신청기간) 공고 후 마감시까지
- (수행기관) 세종상공회의소

□ **지원조건**

- (지원자격) 아래 요건(기업·근로자·기숙사)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|---|
| ① 기업요건 | · 세종특별자치시 내 입주한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모빌리티 기업 |
| ② 근로자요건 | · 해당 산업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*26.02.01.(토)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최소 1인 포함 ※ (정규직 요건)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, 고용보험 가입 |
| ③ 기숙사요건 | · 사업주가 세종시 내 소재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※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산업농공단지 인근에서 공동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단독주택 허용 · 임차료 일부(20% 이상)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·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1개월 이내 대체하여야 해당 기숙사 지원 자격 유지 · 기업이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활용 가능 |

□ 지원절차



□ 사업 신청방법

- (접수방법) 이메일(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)
 - 이메일 : sejongcci02@naver.com
 - 아래의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
 -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 확인 필수
- (제출서류) 작성 서식 및 증빙서류 각 1부

| 구분 | 작성 서식 | 증빙서류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 신청 서류 | ① (서식1)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·확대 프로젝트 (기숙사 임차비) 참여신청서 | 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|
| | ② (서식2) 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| ②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* 관리비 별도 표기 |
| | ③ (서식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근로자) |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|
| | ④ (서식4)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·확대 프로젝트 (기숙사 임차비) 대상자 명부 | ④ 근로계약서 사본(입사일 명시) |
| | ⑤ (서식6)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·확대 프로젝트 신청기업 협약서 | ⑤ 대상 산업 기업 확인 서류 |
| | ⑥ (서식7)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·확대 프로젝트 거주사실확인서(전입신고 안되어 있는 경우) | ⑥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|

※ 모든 서류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

※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,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주 사실 확인서 제출

※ 주거비가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된 경우, 근로계약서 내 주거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비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(제출서류보완)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회차부터 지원을 중단(지원금 부지급)할 수 있음

※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(10영업일 이내)에 한해 연장 가능

□ 지원금 신청방법

- (신청 시기 및 방법)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급 산정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내 신청
- (지원금 신청)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임차비 지급을 증비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신청
- 참여기업은 '근로자 또는 기숙사 변경(공실) 사실 발생 시' 해당 제출서류 구비 후 상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주거비가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된 경우, 근로계약서 내 주거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비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제출
- 신규근로자 중도 퇴사 발생 시 1개월 이내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여 대체하여야 하며,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회차 지원금 지급
- (지원금 신청서류)

| 구 분 | 제출서류 | 비 고 |
|--------|---|-----------|
| 지원금 신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서식4)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확대 프로젝트 (기숙사 임차비) 대상자 명부 ②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③ 월세 납입 증빙자료(3개월치) ④ (서식8)기숙사별 내·외부 사진 ⑤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(전입신고 되어 있는 경우) ⑥ 지원금 수령 계좌사본 ⑦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교육 수료증 1부(근로자 / 최초 1회 제출) | 3개월 단위 신청 |
| 근로자 변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서식5) 근로자 변경(공실) 신청서 ② (서식3)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근로자) ③ 고용보험 상실신고서(퇴사자 발생시) ④ (서식6)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확대 프로젝트 신청기업 약속서 ⑤ (서식7) 근로환경 개선 연계 고용유지확대 프로젝트 거주사실확인서(전입신고 안되어 있는 경우) ⑥ 주민등록등본(전입신고 되어 있는 경우) | 해당 근로자만 |
| 기숙사 변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| 해당 기숙사만 |

□ 사업운영

- 사업주의 월세 납부 서류 및 근로자의 근로확인서류(고용보험 등) 등을 확인하고 월세 비용을 3개월 단위 사후 정산
- 기숙사의 공실 발생 시 사업주 부담
 - ※ 단, 월 15일 이상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의 기숙사 비용 지원

□ 문의처

-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☎ 070-7780-2439

2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및 시설개선

□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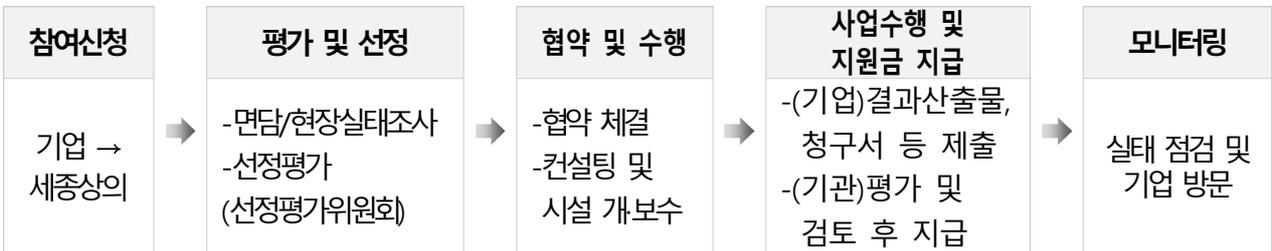
- 세종지역 소재·부품·장비·미래모빌리티 산업 분야 기업 중 신규 인력을 채용예정중인 기업으로,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시설 개·보수 연계 최대 1,000만원 지원
- (지원규모) 컨설팅 10개사·시설개선 5개사
- (지원금액)
 - (외부 전문가 컨설팅) 4회 이내 / 회당 50만원
 - (작업환경·안전·편의시설 등 개·보수) 최대 800만원
 - ※ 기업 자부담 20% 이상 필수
- (지원방식) 고용환경시설 컨설팅 보고서 및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후 신청
- (신청기간) 공고 후 마감 시까지(선착순)
 - ※ 사업기간(2026년도)내에 시설 개·보수 완료 필수
- (수행기관) 세종상공회의소

□ 지원조건

○ (지원자격) 아래 요건(기업)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|--|
| 기업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고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내 본점, 지점,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기업 (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) · (기업규모) 고용보험 가입 대상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기업 |
| 선정 우선순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고용창출계획) - 본 사업기간 내 신규 채용 계획이 1명 이상 있는 기업 · (환경개선 시급성) -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|

□ 지원절차



□ 사업 신청방법

○ (접수방법) 이메일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
- 이메일 : sejongcci02@naver.com

- 아래의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

-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 확인 필수

○ (제출서류) 작성서식 및 증빙서류 각 1부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|--|
| 사업 참여 신청시 | ① (공통서식1) 사업 참여 신청서(사업주) ② (참고1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사업주) ③ (서식9) 기업 소개 및 상세계획서 ④ (서식13) 기업 참여 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⑧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신청일 직전 월말 발급본) ⑨ 대상 산업 확인 서류 (고용보험 업종코드 확인 등) ⑩ 참여자(근로자) 근로계약서 사본 |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|
| 지원금 신청시 | ① (서식10)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(서식11) 고용환경개선 컨설팅 결과보고서 ③ (서식12) 고용환경개선 이행확인서 ④ 기업명의 통장 사본 ⑤ 지출 증빙자료 ⑥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교육 수수료증 1부(대표자 또는 소속 근로자/ 최초 1회 제출) |

※ 협약체결 : 프로그램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은 세종상공회의소와 2자협약을 체결

□ 지원금 신청 및 지급

- (지급방식)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
- (정산원칙)
 - 컨설팅이 실제로 수행된 횟수에 대해서만 지급
 - 결과 산출물이 미비할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,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
- (현장점검) 수행기관 담당자는 컨설팅 기간 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컨설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실시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 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
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 해야 하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필요에 따라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본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타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유사 사업 사전 확인 후 신청 必

□ 문 의 처

-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☎ 070-7780-2439

참고1 지원제외 기업 및 근로자

□ 지원제외 기업
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 - *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,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①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 - 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- ②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최근년도에 공표 중인 기업
 - * (확인 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사전정보 공표목록 > 산재예방/산재보상 > 사업장의 산업 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
- 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용보험법」과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 등을 받고 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주
- ④ 국세·지방세 체납기업
- ⑤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- ⑥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전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기업
- ⑦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자치단체장이 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
- ⑧ 장려금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

감원방지 규정

- 감원방지 대상 : 장려금 지원대상자
- 감원방지 기간 :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
- 위반시 제재 : 장려금 지원대상 기간 중 참여기업에서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, 그 대상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 최초 발생 월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
 - 인위적 감원 발생 이전에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. 다만,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라도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인위적 감원 발생 월부터 이후 기간에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함
- 지원금 지원 제외 :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인위적 감원 최초 발생일 이후 다른 지원 대상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려금 지원이 제한되며, 인위적 감원 최초 발생일 이전 채용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가능

□ 지원제외 근로자

-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 - * 채용 시점뿐만 아니라,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①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
 - * 혼인 등으로 법률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,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제한
- ②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*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
 - * 예) 고용창출장려금, (지역)고용촉진장려금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
- ③ 국내기업의 해외법인(또는 해외지사)의 근무(예정)자로 채용된 자
- ④ 근무시간,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·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
 - *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하는 경우 제외
- ⑤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(채용일 이전 1년에 한함) - 고용촉진장려금만 해당
 -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-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⑦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
- ⑧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
- 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- ⑩ 인력 공급업(7512), 경비 경호업(75310),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(74100) 기업에서 파견, 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
- ⑪ 근속의 중단이 있는 자 : 휴업·휴직(사업장 사정), 휴직(병가 등 근로자 사정), 노조 전임자, 기타 등 근속 중단 시 모두 해당 - 재직자 장려금만 해당
 - ※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의9① 및 별지 제22호의 (단 : 육아휴직, 유산·사산휴가, 출산전후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가지 사유만 예외적으로 근속 중단이 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)

참고2**'26년 지원대상 산업코드 분류표****1 소재부품장비 산업**

| 산업코드 | 산업명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3101 | 면 방적업 |
| 13102 | 모 방적업 |
| 13103 | 화학섬유 방적업 |
| 13104 |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|
| 13109 | 기타 방적업 |
| 13211 | 면직물 직조업 |
| 13212 | 모직물 직조업 |
| 13213 |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|
| 13219 | 특수 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|
| 13300 | 편조원단 제조업 |
| 13401 | 솜 및 실 염색가공업 |
| 13402 | 직물,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|
| 13403 | 날염 가공업 |
| 13409 |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|
| 13992 |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|
| 13993 |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|
| 13994 |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|
| 13999 |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|
| 17103 |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|
| 17106 | 위생용 원지 제조업 |
| 17109 |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|
| 20111 |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|
| 20119 |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|
| 20121 | 수소 제조업 |
| 20122 | 산소,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|
| 20129 |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|
| 20131 |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|
| 20132 | 염료, 조제 무기안료,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|
| 20201 | 합성고무 제조업 |
| 20202 |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|
| 20203 |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|
| 20321 | 화학 살균·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|
| 20322 | 생물 살균·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|
| 20411 |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|
| 20413 |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|
| 20421 | 계면활성제 제조업 |
| 20491 |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|

| 산업코드 | 산업명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493 |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|
| 20499 |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|
| 20501 | 합성섬유 제조업 |
| 20502 | 재생섬유 제조업 |
| 21100 |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|
| 21301 |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|
| 22110 |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|
| 22191 | 고무패킹류 제조업 |
| 22192 |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|
| 22199 |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|
| 22211 | 플라스틱 선, 봉, 관 및 호스 제조업 |
| 22212 |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|
| 22213 |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|
| 22214 |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|
| 22241 |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
| 22249 | 기타 기계·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|
| 22292 | 플라스틱 적층,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|
| 22299 |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|
| 23111 | 판유리 제조업 |
| 23112 | 안전유리 제조업 |
| 23119 |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|
| 23121 | 1차 유리제품,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|
| 23122 |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|
| 23129 |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|
| 23211 |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|
| 23212 |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|
| 23222 |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|
| 23312 |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|
| 23991 |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|
| 23992 | 연마재 제조업 |
| 23993 |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|
| 23994 |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|
| 23995 | 탄소섬유 제조업 |
| 23999 |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
| 24113 | 합금철 제조업 |
| 24121 |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|
| 24122 |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|
| 24123 | 철강선 제조업 |
| 24131 | 주철관 제조업 |
| 24132 | 강관 제조업 |
| 24133 |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|
| 24191 | 도금,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|

| 산업코드 | 산업명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4221 | 동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|
| 24222 | 알루미늄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|
| 24229 | 기타 비철금속 압연,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|
| 24290 |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|
| 24311 | 선철주물 주조업 |
| 24312 | 강주물 주조업 |
| 24321 |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|
| 24329 |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|
| 25121 |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|
| 25122 |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|
| 25123 |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|
| 25130 |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|
| 25200 |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|
| 25911 |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|
| 25912 |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|
| 25913 |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|
| 25914 |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|
| 25921 | 금속 열처리업 |
| 25922 | 도금업 |
| 25923 |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|
| 25924 |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|
| 25929 |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|
| 25934 |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|
| 25941 |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|
| 25942 |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|
| 25943 | 금속 스프링 제조업 |
| 25944 |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|
| 25995 |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|
| 25999 |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|
| 26111 |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|
| 26112 |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|
| 26121 |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|
| 26129 |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|
| 26211 |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|
| 26212 |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|
| 26219 |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|
| 26221 |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|
| 26222 |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|
| 26223 |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|
| 26224 |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|
| 26291 | 전자축전기 제조업 |
| 26292 |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|

| 산업코드 | 산업명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6293 | 전자코일,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|
| 26294 |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|
| 26299 |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|
| 26321 | 기억장치 제조업 |
| 26322 |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|
| 26323 |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|
| 26329 |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|
| 26410 |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|
| 26421 | 방송장비 제조업 |
| 26422 | 이동전화기 제조업 |
| 26429 |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|
| 26511 | 텔레비전 제조업 |
| 26519 |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|
| 26521 | 라디오,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|
| 26529 |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|
| 26600 |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|
| 27111 | 방사선 장치 제조업 |
| 27112 |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|
| 27191 | 치과용 기기 제조업 |
| 27192 | 치과기공물 제조업 |
| 27193 |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|
| 27194 |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|
| 27195 |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|
| 27199 |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|
| 27211 | 레이더,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|
| 27212 | 전자기 측정,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|
| 27213 | 물질 검사,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|
| 27214 |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|
| 27215 |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|
| 27216 |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|
| 27219 | 기타 측정, 시험, 항해,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|
| 27220 |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|
| 27301 |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|
| 27309 |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|
| 28111 |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|
| 28112 | 변압기 제조업 |
| 28113 |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|
| 28119 |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|
| 28121 | 전기회로 개폐, 보호장치 제조업 |
| 28122 |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|
| 28123 |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|
| 28201 | 일차전지 제조업 |

| 산업코드 | 산업명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8202 |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|
| 28209 |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|
| 28301 |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|
| 28302 |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|
| 28303 |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|
| 28410 | 전구 및 램프 제조업 |
| 28421 |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|
| 28422 |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|
| 28423 |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|
| 28429 |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|
| 28511 |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|
| 28512 |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|
| 28519 |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|
| 28520 |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|
| 28901 |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|
| 28902 |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|
| 28903 |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|
| 28909 |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|
| 29111 | 내연기관 제조업 |
| 29119 |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|
| 29120 | 유압기기 제조업 |
| 29131 | 액체 펌프 제조업 |
| 29132 |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|
| 29133 | 탭,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|
| 29141 | 구름베어링 제조업 |
| 29142 |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|
| 29150 | 산업용 오븐,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|
| 29161 |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|
| 29162 | 승강기 제조업 |
| 29163 |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|
| 29169 |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|
| 29171 |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|
| 29172 |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|
| 29173 |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|
| 29174 |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|
| 29175 | 기체 여과기 제조업 |
| 29176 | 액체 여과기 제조업 |
| 29177 | 증류기,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|
| 29180 |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
| 29191 | 용기 세척,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|
| 29192 |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|
| 29193 |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|

| 산업코드 | 산업명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9199 |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|
| 29210 |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|
| 29221 |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|
| 29222 |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|
| 29223 |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|
| 29224 |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|
| 29229 |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|
| 29230 |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|
| 29241 |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|
| 29242 |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|
| 29250 | 음·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|
| 29261 | 산업용 섬유 세척, 염색,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|
| 29269 | 기타 섬유,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|
| 29271 |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|
| 29272 |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|
| 29280 | 산업용 로봇 제조업 |
| 29291 | 고무,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|
| 29292 |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|
| 29293 | 주형 및 금형 제조업 |
| 29299 |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|
| 30110 |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|
| 30310 |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|
| 30320 |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|
| 30331 | 자동차용 부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|
| 30332 | 자동차용 부품 전기장치 제조업 |
| 30391 | 자동차용 부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|
| 30392 | 자동차용 부품 제동장치 제조업 |
| 30393 | 자동차용 부품 의자 제조업 |
| 30399 | 그 외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|
| 31114 |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|
| 31202 |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|
| 31312 |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|
| 31321 |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|
| 31322 |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|
| 31910 | 전투용 차량 제조업 |
| 31921 | 모터사이클 제조업 |
| 31922 |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|
| 31991 |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|
| 58221 |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58222 |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
2 미래모빌리티 산업

| 산업코드 | 산업분류명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29 |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|
| 20203 |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|
| 20499 |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|
| 22211 | 플라스틱 선, 봉, 관 및 호스 제조업 |
| 22299 |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|
| 24222 | 알루미늄 압연, 압출 및 연산제품 제조업 |
| 25112 |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|
| 26295 |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|
| 26299 |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|
| 26429 |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|
| 27211 | 레이더,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|
| 27212 | 전자기 측정,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|
| 27213 | 물질 검사,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|
| 27215 |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|
| 28111 |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|
| 28119 |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|
| 28121 | 전기회로 개폐, 보호장치 제조업 |
| 28122 |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|
| 28123 |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|
| 28202 | 축전지 제조업 |
| 28903 |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|
| 29175 | 액체 여과기 제조업 |
| 29299 |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|
| 30201 |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|
| 30310 |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|
| 30320 |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|
| 30331 |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|
| 30332 |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|
| 30399 | 그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|
| 30400 |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|
| 31311 | 유인 항공기,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|
| 31312 |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|
| 31322 |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|
| 58221 |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58222 |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62021 |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|